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분석-

서 윤 호**

목 차

- | | |
|-----------------------------|----------------------------------|
| I. 서설: 다문화의 범람과 이론적 문제점 | 2.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기초: 승인이론적 다문화주의 |
| II. 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 3.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평가 |
| 1.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과 다문화정책의 문제 | IV.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
| 2. 다문화 논의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 | 1.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 |
| III.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 2. 문화다양성에 대한 검토: 문화다양성협약의 내용과 한계 |
| 1. 독일에서의 다문화 논쟁: 멀티컬처와 주도문화 | V. 결어: 승인이론과 다문화주의 |

I. 서설: 다문화의 범람과 이론적 문제점

‘다문화’라는 말은 이제 일상 속의 용어가 되었으며, 심지어 범람의 상태에 놓여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정작 다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필요한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라든가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사회철학적 함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¹⁾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입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다문화’ 논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A-B00219).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1)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 제24집(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8), 287-310쪽 참조.

지칭하는 용어로 축약되어 있다.²⁾ 그래서 정작 우리 사회의 구성에서 점차 커다란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자들의 다양한 삶의 맥락을 시야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의 구성 비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외국인의 유입 통계에서 6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난민,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언론 등에서 이주자들과 관련한 많은 사안들이 세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비가시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성을 부각시키면서 주어진 기한 내에 노동을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통제와 관리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³⁾

2)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책대상을 결혼이주자 또는 재한외국인 등에 국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다문화공생’이라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일본에서 서로 다른 인종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아직 정책의 중심이 가족에 국한되어 있고, 다문화와 상반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정상우, “일본에서의 다문화사회 지원을 위한 조례연구”, 최신회국법제정보 2008. 7(한국법제연구원, 2008), 88쪽 이하 참조.

3) 한편 국가적 위기과 내전 또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적 보장 장치나 그들을 수용하는 난민수용국가로서의 정책은 부실하다. 난민을 심사할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의 부족과 몰이해가 문제되고 있으며, 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주거안정의 문제를 도외시키고 그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있다. 난민문제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고문헌,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실제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다문화’라는 말로 마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하는 나라임을 가장한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 다문화정책 등등 범람하는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용어와 정책의 붓물 속에서 ‘다문화’로 포장된 우리 사회의 허구적 다양성 뒤에 가려진 이들 보이지 않는 이주자들의 삶을 이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사회에서의 이주자들의 삶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존중하고 승인하는 일이 필요하다.⁴⁾

이 글에서는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다문화정책과 입법에서 기초를 이루는 기본개념들과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철학적 논의들을 주로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 상황과 그에 대한 다양한 다문화정책과 입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논의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II). 이어서 다문화법제에서 중요한 철학적 기초를 이루는 핵심개념인 다문화주의에 대해 그 논의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다문화 관련 논쟁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찰스 테일러가 주장하는 다문화주의와 승인의 정치에 대해 그 기본입장과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문화법제 연구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살펴볼 것이다(III). 다문화주의와 더불어 다문화법제에서 중요한 기초개념을 이루는 문화다양성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선언과 문화다양성 협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의의와 한계를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2011), 35-62쪽; 장복희, “국제인권법상 난민의 보완적 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 안암법학 제27집(안암법학회, 2008), 651-680쪽; 정인섭,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

4)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제2호(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2007), 129-159쪽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서 테일러의 다문화주의가 가지는 의미가 현실적 법제의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IV).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와 승인이론의 토대 위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V).

II. 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1.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과 다문화정책의 문제

우리 정부가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도처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1990년 약 5만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 거주 이주자는 이제 118만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총 인구대비 2.3%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총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7%였으나, 2005년에는 13.6%로 급증했고, 지금은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거주 결혼이주자의 수는 대략 18만 2천여 명 정도에 이른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더불어 한국인과 결혼해 정주하는 외국인들도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하게 되었고, 또 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순혈주의적인 문화도 상당히 바뀌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다문화와 관련한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초창기 이주정책과 관련하여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관리와 통제 위주의 외국인정책을 펼쳐 오다가 이제는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인구 구성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검토와 체계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4월 처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만들어졌고, 이후 ‘외국인정책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외에도 정부는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두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평가 및 범부처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조정·협력을 총괄하게 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부처 내에 ‘다문화가족과’를 두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정부는 2011년에 다문화가족사업을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예산 중 2010년 대비 266억 원 증액된 860억 원을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지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언어교육 등을 지원·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⁵⁾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은 크게 다음의 넷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정책, 복지지원정책, 법률지원정책, 다문화이해정책.⁶⁾ 그 중 다문화교육정책이 가장

5)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권 제1호(푸른길, 2011), 34-64쪽 참조.

비중이 크다.⁷⁾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철학 없이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이 중복된 경우가 많으며,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이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이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수하여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⁸⁾

물론 정부의 정책들은 이전의 외국인정책에 비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의 대상자인 결혼이주자와 IT산업을 포함하고 고급 전문기술 인력에만 사회적 수용과 통합을 적용하고 저숙련 노동인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과 통합보다는 적절한 활용과 배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주정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근방식, 즉 값싼 노동력 확보와 사회적 수용과 통합이라는 이중적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시기 동안 머물다 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그들의 문화 권리를 보호하고 진작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은 매우 미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의 기초를 위해 다문화 논의에서

6) 권순희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교육과학사, 2010), 109쪽 이하 참조. 박성혁은 다문화정책을 다문화교육정책, 보건·의료·복지지원정책, 법적지원정책, 상호이해정책으로 구분한다. 박성혁,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2008), 6-8쪽 참조.

7)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다문화 관련 법과 제도의 분석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권순희 외, 앞의 책, 101-172쪽 참조.

8) 다문화사회의 정책과 입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다음의 팩트북을 참조하라. 국회도서관, 다문화가정-한눈에 보기(국회도서관, 2010).

기초를 이루는 다양한 기본개념들에 대해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다문화 논의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

다문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개념들은 문화,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문화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 문화다양성 등 매우 다양하다.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별도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문화 개념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다문화와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다. 주로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유형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문적 논의를 중심으로 다문화법제의 체계를 위한 기본개념들을 검토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단일한 문화로서 이해되는 전통적인 문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 현상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문화 개념의 구상은 18세기말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에 의해서 정식화되고 있다. 헤르더의 문화 개념은 크게 사회적인 동질화, 인종적인 기반 그리고 상호 문화적 경계설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 개념은 오늘날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현대의 문화가 표출하고 있는 내적인 복잡성에 도저히 부응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⁹⁾

전통적 문화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인종적인 기반은 애매하며, 민족에 대한 정의도 허구적이다. 이러한 문화 개념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혼합의 다양한 증거를 모두 부인해야 하는 어려움에

9) 문화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드니 쿠슈, 이은령 옮김,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한울아카데미, 2009). 문화 개념에 대한 비판은 니시카와 나가오, 한경구 외 옮김, 국경을 넘는 방법(일조각, 2006) 참조.

빠진다. 더욱이 그러한 편협한 민족에 대한 정의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적 문화 개념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통적인 문화 개념의 구상은 외적인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타자의 문제는 근대의 특징적인 산물 중의 하나이다. 근대 주체의 형성에는 바로 타자와의 경계 설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문화 구상은 내적인 동질화와 외적인 경계 설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 구상은 자신의 개념적인 귀결에서 문화적 인종주의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문화 개념은 오늘날의 문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험적으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위험하고 근거가 미약하다.

전통적인 문화 개념이 아닌 새로운 문화 개념 위에서 전개되는 다문화사회란 어떤 사회이며, 어떠한 유형의 다문화사회가 존재하는가?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민족적, 인종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다민족사회와 다인종사회로 구분되고 있다. 다민족사회는 인종보다는 다양한 민족이나 부족 및 그들의 문화로 구성된 사회이다. 반면에 다인종사회는 여러 민족보다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를 말한다. 여러 인종의 이민으로 형성된 미국이나 캐나다가 대표적인 다인종사회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다문화사회의 두 가지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다민족사회의 유형의 다문화사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인 주로는 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결혼이민과 취업을 통해 아시아에서 유입된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다인종사회에서 실시되는 다문화정책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다민족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고 하

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¹⁰⁾ 물론 이러한 주장은 경청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느 쪽의 다문화사회이든 뚜렷한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차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이들의 연구 속에서 서구의 다문화정책과 구체적인 차별성을 가지는 우리의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한국적 다문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기업, 도시 또는 국가와 같은 조직적 수준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기초로 특정장소의 인구학적 구성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종 문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는 현대 사회가 평등한 문화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¹¹⁾ 국내의 학자 중에서 윤인진은 다문화주의를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로 이해하고 있으며,¹²⁾ 정상준은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¹³⁾ 그 외에도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정의가 가능할 수 있을

10) 김혜순 외,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이론화(동북아시아위원회, 2007); 최종렬 외,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참조.

1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동녘, 2008), 89쪽 참조.

12) 윤인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2007), 73쪽 참조.

13)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제43집(열음사, 1995), 81쪽 참조.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정의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인식 및 실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 국가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의 혼재와 공존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문화적 동일화의 논리만을 고집하여 다른 문화나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다문화주의의 특성인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룬다고 하여도 그 다양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여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관습 등을 따라야 함을 주장하며,¹⁵⁾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양성의 승인을 더 보장하면서 차별을 금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14) 찰스 테일러는 “승인의 정치”라는 그의 논문에서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승인의 정치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불인정과 잘못된 인정은 그 인정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억압하며 허위의식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양식을 변형시킨다고 보고 있다.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5쪽 이하 참조.

15)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대표자로는 윌 킴리카가 있다. 킴리카는 사회적 문화로의 통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민형성의 과정에는 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첫째, 그들 주변에 대규모 이민을 받아줄만한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우호적인 국가가 있는 경우 이들 국가로 이민하는 경우, 둘째, 좀 더 공정하고 나은 통합의 조건을 협상하면서 주류문화에 통합을 수용하는 경우, 셋째,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자치권력을 추구하는 경우, 넷째, 사회의 주변부에서 단지 간섭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구적인 한계화를 받아들이는 경우 각각의 소수민족이나 인종 집단은 상이한 대응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Seco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46쪽 이하 참조.

사회적 소수자의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인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지원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며,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경우를 말한다. 이 밖에도 다문화주의의 유형을 상징적 다문화주의, 리버럴 다문화주의, 코퍼레이트 다문화주의, 연방제 다문화주의, 분단적 다문화주의, 분리독립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지 정도와 그 허용의 강약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입장도 있다.¹⁶⁾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실현되는 정책의 유형은 동화주의, 통합주의, 다문화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형과 비슷하면 서로 약간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정책의 유형은 용광로이론, 모자이크이론, 샐러드접시이론으로 구분된다.¹⁷⁾ 여기에서는 후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동화주의, 통합주의, 다문화주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용광로이론은 기본적으로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의 주류집단인 다수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와 소수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를 용광로에 모두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려는 정책이 그것이다. 용광로이론은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수인종과 민족이 자신의 언어, 종교, 관습 등을 포기하고 그 사회의 주류집단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함으로써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와 인권이 침해되고 주류집단과 소수인종이나 민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16)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7), 67쪽 이하 참조.

17) 권순희 외, 앞의 책, 108쪽 이하 참조.

모자이크이론은 통합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입장에서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 주류집단의 문화뿐만 아니라 소수인종과 민족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들이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모자이크이론에서는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론에서는 다수의 인종과 민족이 누리는 문화를 주류집단의 문화로 인정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결국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는 주류집단의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변문화로 전락하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샐러드접시이론은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따라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말한다. 샐러드접시이론은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나열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결합하지만 각 집단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이 이론에 기초한 다문화정책은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이 동등하게 공존하도록 소수인종과 민족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대체로 다문화주의 또는 샐러드접시이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통합주의 또는 모자이크이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찰은 뒤에서 테일러의 승인이론적 다문화주의에 관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다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상대주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상대주의는 문화는 다양하며 각 문화는 그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하며,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견해이다. 문화상대주의가 등장한 배경에는 과거 유럽, 즉 서구 중심의 문화 이해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깔려 있다.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문화에는 어떤 중심도 없으며 어떤 보편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문화는 각각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개별 문화 사이에 가치 우열은 없다고 하는 것이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의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관점이 아닌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처한 문화적 맥락에서 보아야 하며, 특정한 설명적·이론적 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동감적 태도로 조심스러운 현상학적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의 태도는 유럽중심주의나 서구 중심의 문화관에서 벗어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를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할 경우 각 문화의 고유한 특수성과 독자적 가치는 인정되겠지만 각 문화 서로 간의 대화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문화의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경우 문화상대주의는 ‘아무나 옳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다수문화와 소수문화의 충돌과 갈등에서 문화상대주의는 아무런 대답도 줄 수 없으며, 결국에는 힘의 논리를 그대로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입장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상대주의의 문제도 뒤에서 테일러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고찰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이제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중요한 핵심개념인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Ⅲ.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1. 독일에서의 다문화 논쟁: 멀티컬티와 주도문화

다문화주의는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전형적인 이민국가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등으로 확장되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서의 다문화 논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¹⁸⁾ 여기에서는 예시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면서 우리보다 앞서 이주노동자 및 이주자와 관련한 문제를 겪었던 독일의 사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일은 스스로 이주자의 나라가 아니라고 되풀이해서 주장하지만, 현재 약 1천4백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명실상부한 이주국가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던 독일에서 다문화 관련 논쟁은 ‘멀티컬티’(Multikulti)와 ‘주도문화’(Leitkultur) 논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멀티컬티’는 1980년대 말 독일의 외국인정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멀티컬티를 지지하는 입장은 다문화를 배타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멀티컬티 개념은 1980년대 말 장기 체류하는 정착 외국인들에 대한 이주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 1990년 말부터 점차 외국인정책으로 확대되어 전 사회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1998년에는 독일의 선거와 관련하여 녹색당이 선거 전략으로 멀티컬티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반해 ‘주도문화’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의 보수정당들이 멀티컬티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한 사회에는 이를 주도하는 문화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주도문화는 그 사회의 정체성

18) 각 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은 최종렬 외, 앞의 책, 43쪽 이하 참조.

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 11월 6일 CDU(기민당)는 지도부 회의에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독일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독일어·독일 역사·독일 관습 등을 의무적으로 익혀야 한다는 ‘주도문화’ 개념을 승인했다. 독일에 살기 원하는 외국인들은 독일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와 법질서에 순응해야 하며, 이와 같은 원칙을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이다.

당시 독일의 SPD(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CDU의 ‘주도문화’ 논쟁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당시 총리였던 슈뢰더는 CDU의 ‘주도문화’ 개념에 대해 ‘매우 기괴하고 촌스러운 발상’이라고 폄하하고, CDU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주도문화’에 대항하는 ‘다양성의 문화’를 주창하며, CDU가 국수주의적 발상으로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쿤터 그라스 같은 독일의 진보적 지식인들도 ‘주도문화’ 개념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나치 독일 당시의 외국인정책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멀티컬티와 주도문화 논쟁을 통해 구체화된 독일에서의 다문화 논쟁은 다문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매우 전형적인 논쟁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반-다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문화와 관련한 이론적 논쟁에서도 다문화 비판적 논의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정책에서 퇴보의 길을 걸었던 독일의 주도문화 논리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도문화의 논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 세계적인 조류에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¹⁹⁾

19) 최근의 다문화주의 실패 논쟁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공화주의적 주도문화에 대하여는 정창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주도문

2.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기초: 승인이론적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대로 살펴보려면,²⁰⁾ 윌 김리카,²¹⁾ 찰스 테일러,²²⁾ 비쿠 파레크²³⁾ 등의 주장을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리카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는 입장이며, 테일러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자로서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승인의 정치’와 관련하여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밝히고 있다. 파레크는 소수 집단에게 예외적인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 역시 사회적 화합이나 문화적 다원성, 공동의 귀속감 등 집합적인 목적을 위해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집단과의 평등만을 의식한 채 부정적으로 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 역시 사회가 존중해야 할 많은 가치들 가운데 하나라고 파악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해 승인이론의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테일러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테일러는 ‘다문화주의’에서 ‘진정성의 윤리’와 ‘승인의 정치’를 통해 소수자의 권리와 문화 차이라는 현대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테일

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0권 제1호(한국유럽학회, 2012), 73-101쪽 참조.

20)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하여는 진은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철학 제95집(한국철학회, 2008), 259쪽 이하 참조.

21)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윌 김리카, 장동진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동명사, 2010); 설 한, “김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제1호(한국정치학회, 2010), 59-84쪽 참조.

22) Charles Taylor, 앞의 책.

23) Bhikhu Parekh, *Rethinking Multicultur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러는 개인의 ‘진정성 윤리’를 강조하지만, 윤리적 원자주의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국민국가의 민주주의적 형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 까닭은 근대 민주주의가 인민주권론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통합의 논리를 자체 내에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배제의 논리로도 실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근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인민과 비인민, 국민과 비국민이 현실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서 배제의 논리가 발생한다고 테일러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국민으로서 이주노동자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분명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²⁴⁾

소수자의 문제는 법적·정치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대의민주주의가 포착하지 못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다수결주의는 모든 정치문제를 다수의 의결에 의해 또는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공직자 다수의 의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견고하게 구조화되면, 민주주의에서 소수에 대한 다수의 부정의한 억압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소수의 부정의한 횡포를 방지하고 다수의 주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다수결 민주주의의 정의로운 절차가 항상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산출해온 것만은 아니다. 테일러는 여기에서 비인민, 비국민으로 규정된 집단이 승인의 정치에 입각해 자기의 몫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테일러가 승인의 정치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퀘벡주 분리운동과

24) 한도현 외, 이주노동자들의 권익과 시민공동체(백산서당, 2010), 30쪽 이하 참조.

같은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지만, 비인민과 비국민으로 규정된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승인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적인 이론의 차원에서도 잘 논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테일러는 문화적 차원에서 차이의 승인에 기반한 문화다원주의를 지지한다. 그는 인종이나 민족, 소수나 하위집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장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성은 차별성을 전제한 것으로 통약 불가능한 다양성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가 사용하는 승인의 개념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나온 것이다.²⁵⁾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생사를 건 승인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헤겔은 승인을 인간이 사회적·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에 내재하는 주요한 욕구라고 밝히면서, 노예와 주인 사이의 승인투쟁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승인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헤겔은 사물, 소유, 노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각각 해명하고,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가 자기의식의 승인투쟁을 통해 상호 승인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상호 승인은 자신의 본질이 타자 속에 있으며 자신의 진리는 반드시 타자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터 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예는 강제된 노동을 통해 이러한 승인투쟁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러한 승인은 자기와 타자의 구별 속에서 자기와 타자의 통일을 실현하는 보편적 자기의식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개별적 대존재의 자유에만 머무는 주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타자의 욕구와 노동을 포함하는 노예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헤겔의 승인투쟁에서 노예는 주인을 위한 노동의 과정에서 자기 욕망의 절제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형식적 주인이 아니라 실질적 주인이

25) 헤겔의 승인이론에 대하여는 Yunho Seo, *Rechtsontologie und Hegels Rechtsbegriff* (Peter Lang Verlag, 2004), 128쪽 이하 참조.

되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주인과 노예의 승인투쟁에서 자기의식은 또 다른 자기의식과의 매개를 통해서만 구체적이고도 보편적인 자기의식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헤겔은 상호 승인을 통해 도달한 보편적 자기의식이 바로 “나인 우리, 우리인 나”라고 주장한다. 헤겔에 따르면 타자와의 매개 없이 자기의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아 = 자아’라는 추상적 자기의식에만 매달려 있는 즉자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타자와의 변증법적 매개 과정이 없이 일방적인 보편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내용이 결여된 공허하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테일러는 헤겔의 승인 개념을 통해 승인이 인간의 본질적 욕구에 해당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그 자체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자기의 실현도 타자와의 승인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테일러는 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진정성의 윤리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내재적 요소를 이룬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진정성의 윤리적 요구가 자기 폐쇄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넘어서는 영역 또는 지평이 필요하다고 한다. 개인은 타인들의 지평과의 관련 속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또한 그 속에서 타자와 차별되는 자기실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는 자기 진실성의 문화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동시에 개인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지평이라고 강조한다. 정체성의 형성과 자기 진실성의 실현은 이러한 지평을 형성하는 차별성, 다양성, 다문화성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자기 진정성에 기초하여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평이 필요하다. 개인이 자기에 충실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승인받고자 한다면, 타자와의 지평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으로부터 사회적 승인의

욕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테일러는 이러한 사회적 승인은 상대주의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실현과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은 상호 승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테일러가 주장하는 승인의 정치는 개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이 갖는 문화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의 승인은 개인이 자기정체성을 형성해온 각각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을 맺는다. 다시 말해 개인의 승인은 문화 간 차이와 그 차이를 승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테일러는 이러한 점에서 각각의 공동체가 갖는 특수한 이념과 이상에 대한 동등한 승인을 요구하는 문화다원주의를 옹호한다. 파레크도 각 문화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지적·도덕적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또한 그 상상력을 확장하고 자기 문화를 절대화하려는 명백한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²⁶⁾ 이것은 바로 테일러가 주장하는 ‘승인의 정치’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승인의 정치를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과 우리의 차이, 다시 말해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타자들도 우리처럼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통해 우리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문화의 종속이나 문화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승인의 정치를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서로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차이에 대한 승인의 결여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 및 문화에 대한 불승인과 그에 기반한 한국 문화로의 통합은 그들을 한국 시민과 다른 2등 시민의 위치로 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수평적 존중과 상호간의 정체성의 승인을 통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²⁷⁾

26) Bhikhu Parekh, 앞의 책, 336-338쪽 참조.

테일러의 승인이론에 기초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배제와 동화의 논리 위에 서 있다.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기정체성을 승인해야 한다. 테일러가 주장하듯이 타자 정체성의 승인은 문화상대주의와는 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상대주의는 각 문화는 유일한 것이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한다. 문화상대주의는 문화 간의 통약 불가능성을 주장하지만, 타자와의 상호 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타자와의 대화의 근거나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상호승인에 기초한 테일러의 다문화주의는 이주노동자 및 이주자 등 소수자의 권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승인을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수자의 다문화와 차이를 기존 공동체의 문화와 통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우리 사회 일각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테일러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이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나 통합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새로운 문화적 발전에 영감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

3.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평가

앞에서 다문화주의의 내용을 테일러의 주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많이 나타난다.²⁷⁾ 이들

27) 송재륜, “다문화 시대의 사회윤리: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사회이론 제35집(한국사회이론학회, 2009), 79-106쪽 참조.

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눈에 띄는 대안의 제시로 김비환은 실용-신중주의적 보편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²⁹⁾ 박준혁은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고 있다.³⁰⁾ 여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피하기로 하고, 초문화주의를 주장하는 벨쉬의 입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다문화주의 비판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벨쉬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의 상호 병존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정신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문화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병존적인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작용의 틀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것을 초문화주의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벨쉬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³¹⁾ 초문화주의라는 표현에서 TRANS가 가지는 의미로서 삼투작용과 상호적인 연결이라는 점에서 통문화주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일문화라는 전통적 문화개념과 다문화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내적 동질화와 외적 경계설정을 넘어서고 초월한다는 점에서 초문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벨쉬의 입장에 따르면, 다문화주의의 구상은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사회 안에서의 상이한 문화의 공존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데,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만으로도 다문화주의는 예전에 제기되었던 전통적 문화개념의 구상에 포함된 사회적인 동질화를 향한 요구에 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한 사회 내부에

28) 정치철학에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비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사회과학 제35권 제1호(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205-236쪽; 박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제15집 제2호(대한정치학회, 2007), 23-42쪽.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주의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에 관한 전반적인 서술로는 김남규,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경제와 사회(한국산업사회학회, 2008), 343-361쪽 참조.

29) 김비환, 앞의 논문, 230쪽 이하 참조.

30) 박준혁, 앞의 논문, 34쪽 이하 참조.

31) 벨쉬의 초문화주의에 대하여는 최성환, 앞의 논문, 302쪽 이하 참조.

서의 문화적 복수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의 해결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그 까닭을 여전히 예전의 동질화하는 문화 개념을 통해 다문화주의의 구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벨쉬는 다문화주의에 내재하는 문화상대주의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면서, 문화 사이의 우열을 거부하는 입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벨쉬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김리카 등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승인이론의 입장에서 문화상대주의적 입장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테일러의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벨쉬의 비판 가운데에서 다문화주의의 구상은 모든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개념의 전제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경청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승인이론에 기초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 외에도 문화의 공존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정치철학적 입장이 있는데, 그들이 서 있는 철학적 토대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대부분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다문화정책을 구상하는 통합주의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통합의 위기(Integrationskrise)를 지적하면서 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²⁾ 그러나 이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승인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모두 사회철학적 기초에 이론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2) Stefan Luft, *Abschied von Multikulti: Wege aus der Integrationskrise* (Resch-Verlag, 2007).

IV.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1.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

이제 다문화주의와 함께 다문화법제의 체계를 위한 중요한 기본개념을 이루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법률적 자료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논의되는 문화적 권리는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인권의 차원에서 문화적 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는 문화다양성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문제로 환원된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는 연대권과 더불어 제3세대 인권으로서 파악된다. 제3세대 인권은 제1세대 인권인 전통적인 자유적 권리와 제2세대 인권인 사회적 권리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국제인권법의 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³³⁾ 문화다양성과 인권이라는 주제는 유네스코 선언의 2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³⁴⁾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다양성이 오히려 인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에서 제기된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베일 착용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쟁과 여성의 음핵절제 사례가 그 예에 해당한다. 베일 착용금지 법안을 둘러싸고는 의견의 대립이 나타난다. 어떤 이들은 차이의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베일을 단지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베일

33) 제3세대 인권에 대하여는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아카넷, 2006), 161쪽 이하 참조.

34) 유네스코 선언 제5조와 제4조, 협약 제2조의 내용을 참조하라.

착용을 비난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신식민지주의라고 비판한다. 다른 이들은 종교적 상징인 베일은 세계 도처에서 여성의 열등한 위치의 표지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그것을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관용의 탈을 쓴 인종주의라고 비판한다.

음핵절제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몇몇 소수집단이 지키고 있는 음핵절제의 관습은 대체로 가정 내에서 전통 산파에 의해 불법으로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시술이 여러 합병증을 초래하여 여자아이가 응급실로 실려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여자아이의 부모와 산파는 상해치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에서는 이 관습을 둘러싸고 두 입장이 서로 대립한다. 계몽주의의 보편주의에 근원을 둔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과 조상들의 권위와 관습에 기반을 둔 전통문화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한다. 가족들은 관습에 의거하여 음핵절제 시술이 여자아이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에의 귀속감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여자아이의 행복에 필요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음핵절제가 인간의 신체 보존권에 대한 동의 받지 않은 침해이며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베일착용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음핵절제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가족 및 여성들의 자발적 동의가 확인되기 때문에 판결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여기에서는 문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한다. 한쪽 끝에는 문화상대주의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현대 서구의 법학자들이 있다. 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여러 문화의 가치를 평가할 초월적인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들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계몽주의 철학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비인간적인 관습을 보편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의 준수만이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립의 배후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 개념과

문화다양성 개념이 서로 양립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다양성이라는 두 개념의 양립가능성에 관해서는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³⁵⁾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승인이론에 기초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승인이론적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양성과 인권의 보편성의 양립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다양성에 대한 검토: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과 한계

이제 문화다양성 협약 속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어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과 그 속에서 중심을 이루는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법학에서의 대부분의 논의는 국제경제법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³⁶⁾ 법학 이외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논의가 문화산업과의 관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³⁷⁾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35)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 문화다양성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 제50권 제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261-284쪽. 김남국의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I.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전후 정치환경과 문화적 권리의 부재. IV. 1966년 협약들과 2005년 문화다양성협약: 문화적 권리의 발전. V. 결어: 보편적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 김남국은 이 논문에서 문화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를 그 강도에 따라 각각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36) 법학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연구로는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중앙법학 제10권 제2호(중앙법학회, 2008), 211-247쪽; 박병도/김병준, “문화다양성과 국제법-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16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77-413쪽 참조. 그 외에 이근관, 박경신, 이해영, 박덕영, 박현석, 이한영 등의 연구가 있다.

본격적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인권으로서 파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는 스크린쿼터를 수호하고자 하는 영화계의 논리로 비춰져 왔으며, 또 실제로 세계 문화다양성 운동과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 비준 촉구에 있어 국내 영화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급속한 세계화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집단 및 국가의 고유한 문화정체성 상실과 문화 획일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요즈음 문화산업의 분야를 넘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국내의 현실에서는 현재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으며,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의 인식 또한 상당히 부족하다.³⁷⁾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문화다양성은 전 세계 다양한 문화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 자체로 인정되고 보존될 때만이 인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유네스코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2001년 11월에 열린 제3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 제1조에 제시된 문화다양성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집단과 사회의 독특함과 다원성 속에서 구현된다.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과 같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현재

37) 법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연구로는 김정수, “문화산업, 문화교역, 그리고 문화다양성”,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2호(한국국제통상학회, 2006), 41-67쪽; 윤지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 사례”, 정보통신정책 제20권 제19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34-38쪽. 그 외에 강내희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연구가 있다.

38)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참조.

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전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기본적인 특성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고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기본 목적은 ‘문화 간 대화 장려와 문화상호성 강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내·국제적 인식증진 및 활동’, ‘정체성과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 활동과 상품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강화’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³⁹⁾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의 권리로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규제, 재정지원, 공공기관 설립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6조),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할 위험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 간 위원회에 보고함(제8조), 당사국은 4년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를 유네스코에 보고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함(제9조),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제11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다른 조약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조약을 해석·적용 시 또는 이후 다른 조약 체결 시 문화다양성 협약의 관련 규정을 고려함(제20조),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39) 정감영,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문화정책과제 및 교류협력사업 개발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3쪽 이하 참조.

간의 분쟁은 교섭, 주선, 중재 또는 부속서에 따른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단 당사국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상기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음(제25조).

이와 같이 문화다양성 협약은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류의 상당한 진전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비판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점은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아직 명확한 철학적·정치학적·법적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용어는 문화적 예외라는 상대적으로 수동적·방어적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급조한 개념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먼저 유네스코 “선언”의 모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도 정작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에 관한 만족할만한 개념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⁴⁰⁾ “협약”에 이르러서야 문화다양성 개념의 공식적인 정의가 비로소 등장하는데, 이 때에도 여전히 이전의 개념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난다.

“협약”은 먼저 다양한 일련의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문화 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협약에서의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문화다양성

40)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은 유네스코가 위촉한 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 1996년 7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해당한다.

이란 용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서 기원하며 또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협약의 설명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유네스코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해석, 즉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치, 믿음, 언어를 총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문화의 의미는 상당히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혼동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협약이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약이라는 “협약”의 제목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물론 유네스코는 “자주 제기되는 30개 질문”에서 “왜 협약이 문화다양성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대해 유네스코가 마련한 여러 법적 장치들이 이미 작동중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대답이 개념정의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을 거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이르는 동안, 문화다양성은 적어도 공식적인 주요 텍스트에서는 확실한 개념정의 없이 폭넓은 의미의 영역에서 표류하고 있다. 협약의 표결에 참여한 154개 국가 가운데, 148개 국가가 찬성하였고, 4개 국가가 기권, 2개 국가가 반대하였다. 반대한 두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세계적인 열광은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가진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다양성 개념의 의미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그 개념을 뒷받침하는 전제들이 분석되지 않을 때 그 개념은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명확한 개념정의의 부재는 결국 용어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수아 드 베르나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무비판적으로 아무 때나 아무 주제에 서나 나오면서 언어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상업광고의 슬로건 차원으로 전락한 이 표현이 본래 드러내야 할 본질적 대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의 유용성과 가치 자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사용에 맞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재정 의하고, 동시대의 지평에 확고히 뿌리박을 수 있도록 적절하고 새로운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⁴¹⁾ 세계화가 인류에게 가져온 새로운 기회와 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서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가진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프랑수아 드 베르나르는 문화다양성 개념의 재정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작업의 하나로 다양성 개념이 라틴어 어원에서 가졌던 의미의 회복을 제안하고 있다. 라틴어에서 *diversus*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립, 불일치, 모순 등 적극적이고 동적인 의미에서의 상이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적이고 정적인 의미에서의 다수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단어는 신사적이고 온화한 합의보다는 투쟁 속에서 생겨나는 운동을 뜻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에 가깝다. 그렇다면 문화다양성을 이러한 적극적 의미에서 실현하기 위한 조건, 즉 문화의 혼합과 공유의 가능조건이자 차이들의 상호 파괴적이지 않는 공존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를 위해서는 승인이론적 다문화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문화다양성의 새로운 명확한 개념정의 작업이 필요하다.

V. 결어: 승인이론과 다문화주의

도처에서 우리는 혼합과 융합의 문화 현상을 경험한다. 오늘날 정체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은 지금이 일종의 위기이며 전환기라는

41) 김창민 외, 세계화 시대의 문화 논리 :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해외 문화 전략 사례 연구(한울아카데미, 2005), 15쪽 이하 참조.

것을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와 타자의 경계가 애매해졌으며,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자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이 일반화되고 있다. 테일러의 승인이론적 다문화주의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의 요체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의 인식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생각하는 방식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은 필연적으로 타자에 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문화는 끊임없는 형성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은 오히려 문화의 창조적 요소이며, 심지어 갈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의 창조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특정한 개별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서도 타당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면서 기존의 문화 이해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에게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는 타문화는 우리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새로운 형성체를 가능케 하는 근본 동력이 된다.

다문화주의가 경직화된 이념적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호 소통적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매체, 개인 그리고 국가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성찰적 실천이 요구된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타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이해이어야 한다. 우리도 그들에게는 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합해서 바로 인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일종의 열려 있는 의사소통적 공간으로서 나와 타자를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승인이론에 기초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정책과 입법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본개념이다. 이와 같은 철저한 사회철학적 기초 위에 정립된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이해가 전제되어야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될 때에만 다문화 상황은 우리가 태어난 불완전하고 제한적

인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진정한 자신과의 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화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은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감수해야 하는 불행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축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문화다양성, 다문화정책, 다문화법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된 짧은 단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 논의가 매우 좁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②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없다. ③ 다문화주의 개념은 아직 형성 중에 있다. ④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비판에는 각각 허와 실이 있다. 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입법에는 일관된 체계성이 부족하다. ⑥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⑦ 문화다양성 협약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⑧ 인간을 위한 진정한 문화의 시대가 와야 한다.

(투고일 2012년 8월 31일, 심사(의뢰)일 201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12일)

주제어 : 다문화주의, 문화다양성, 찰스 테일러, 월 킴리카, 문화상대주의, 승인 이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순희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2010.
- 김창민 외, 세계화 시대의 문화 논리 :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해외 문화 전략 사례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5.
- 니시카와 나가오, 한경구 외 옮김,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2006.
- 드니 쿠슈, 이은령 옮김,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 한울아카데미, 2009.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2008.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 월 김리카, 장동진 역,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 정인섭,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2011.
- 한도현 외, 이주노동자들의 권익과 시민공동체, 백산서당, 2010.
- Bhikhu Parekh, *Rethinking Multicultur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Stefan Luft, *Abschied von Multikulti: Wege aus der Integrationskrise*, Resch-Verlag, 2007.
- Yunho Seo, *Rechtsontologie und Hegels Rechtsbegriff*, Peter Lang Verlag, 2004.
-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Seco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 논문

- 고문현,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1, 35-62쪽.
- 곽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제15집 제2호, 대한정치학회, 2007, 23-42쪽.
- 김남국,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경제와 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2008, 343-361쪽.
-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 제50권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261-284쪽.
- 김비환,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사회과학 제35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205-236쪽.
-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2007, 129-159쪽.
- 김정수, “문화산업, 문화교역, 그리고 문화다양성”,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6, 41-67쪽.
- 박병도/김병준, “문화다양성과 국제법-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1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77-413쪽.
-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중앙법학 제10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08, 211-247쪽.
- 설 한,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0, 59-84쪽.
- 송재룡, “다문화 시대의 사회윤리: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

- 리고 그 너머”, 사회이론 제35집, 한국사회이론학회, 2009, 79-106쪽.
- 윤지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 사례”, 정보통신정책 제20권 제1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34-38쪽.
- 장복희, “국제인권법상 난민의 보완적 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 안암법학 제27집, 안암법학회, 2008, 651-680쪽.
- 정상우, “일본에서의 다문화사회 지원을 위한 조례연구”,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7, 한국법제연구원, 2008, 85-94쪽.
-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제43집, 열음사, 1995, 79-95쪽.
- 정창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주도문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유럽학회, 2012, 73-101쪽.
-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권 제1호, 푸른길, 2011, 34-64쪽.
- 진은영, “다문화사회와 급진적 인권”, 철학 제95집, 한국철학회, 2008, 255-283쪽.
-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 제2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8, 287-310쪽.

3. 기타

- 국회도서관, 다문화가정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10.
- 김혜순 외,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이론화, 동북아시아위원회, 2007.
- 박성혁,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2008.
- 윤인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2007.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정갑영,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문화정책과제 및 교류협력사업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최종렬 외,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08.

[Zusammenfassung]

Multikulturalismus und Kulturdiversität

– Analyse der Grundbegriffe zur Multikulturellen Legislation –

Yun-Ho Seo*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Analyse der Grundbegriffe zur multikulturellen Legislation wie Multikulturalismus und Kulturdiversität. Das Wort ‘Multikultur’ ist zwar im alltäglichen Leben verbreitet, aber seine sozialphilosophischen Implikationen sind immer noch nicht klar zum Tage gekommen. So ist das vor allem im Bereich der Politik und Legislation zur Multikultur, wo die meisten Diskussionen auf die multikulturellen Familien und ihre Kindern konzentriert sind. Um die systematische Untersuchung zur multikulturellen Legislation vorzubereiten, ist es erforderlich, ihre Grundbegriffe und grundtheoretische Diskussionen um den anererkennungstheoretischen Multikulturalismus zu analysieren. Zunächst wird es kurz beschrieben, wie in unserer heutigen Gesellschaft die multikulturellen Situationen vorkommen und welche Politik und Gesetzgebung dafür entfaltet sind. Daraus ergeben sich die Lücke der jetzigen Diskussionen um Multikultur und die Notwendigkeit der gründlichen theoretischen Prüfungen zur Grundbegriffe der multikulturellen Legislation(II). Anschliessend wird in der Betrachtung des Kernbegriffes Multikulturalismus, der zur systematischen Untersuchung der multikulturellen Legislation eine

* Privatdozent an der Uni. Konkuk, Dr. iur.

wichtige philosophische Grundlage bildet, zuerst die deutsche Debatte zwischen Multikulti und Leitkultur, und dann die philosophische Begründung des anerkennungstheoretischen Multikulturalismus von Charles Taylor behandelt. Die Betrachtung der beiden könnten uns grosse Anregungen für die Orientierung zur multikulturellen Legislation geben(III). In der Betrachtung des anderen Kernbegriffes Kulturdiversität werden hauptsächlich die Inhalte der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und ihre Grenze behandelt. Hier werden die Unklarheit des Begriffes Kulturdiversität und die Notwendigkeit der neuen Begriffsbildung im Zusammenhang mit der anerkennungstheoretischen Multikulturalismus diskutiert(IV). Abschliessend wird die Möglichkeit und Bedeutung der auf Anerkennungstheorie basierten Untersuchung der multikulturellen Legislation beschrieben(V).

Stichwörter : Multikulturalismus, Kulturdiversität, Charles Taylor, Will Kymlicka, Kulturrelativismus, Anerkennungstheorie, Liberalismus, Kommunitarianismus

